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397호
- 나. 발 의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14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체력저하와 비만관련 지표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 체력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체력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근거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력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안 제16조제9호)
- 현재 제9호를 제10호로 함(안 제16조제10호)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을 위해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생활체육 환경 현황

- 서울시는 스포츠 환경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체육시설 추가 확충(680개소)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운영을 정책목표로 한 “생활체육 도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 (2022.6.)을 수립한 바 있음.
- 공공 생활체육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기감과 고립감 확산으로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용부담이 큰 민간 시설보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1.55㎡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이처럼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도입 ▶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 모두 함께 즐기는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등 3개의 정책사업 추진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나. 시민 체력증진 활성화 및 사업지원 시설(안 제16조제9호의 신설)

- 개정안은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체력증진 활성화 및 사업지원’ 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생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개정안은 이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진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1**집행부 검토의견**의안번호
1397**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길영		2023.10.1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 신설 -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에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 사항 신설					
추진경과	○ 202.10.16. 김길영 의원 발의 ※(찬성) 김규남, 김동욱, 김용호, 김춘곤, 김혜영, 서호연, 송경택, 심미경,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최민규, 한신, 황철규(14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팀장	성현욱(☎2133-2732)	담당	양윤미(☎2133-2733)	